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89
----------	------

발의연월일 : 2016. 10. 28.

발 의 자 : 곽상도 · 유승민 · 박맹우
전희경 · 이종명 · 염동열
권성동 · 정태옥 · 김석기
추경호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피해구제수단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에 한정됨.

그런데 명백하게 거짓된 내용을 포함한 기사가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거짓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의 사이트에 복제·전파되어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언론보도로 인한 제반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도 일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사의 수정·보완·삭제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침해배제청구권을 도입하고 기사 댓글 등으로 인한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전파’, ‘검색서비스’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 등에 관한 다툼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 법의 목적과 언론중재위원회 설치 목적을 개정함(안 제1조 및 제7조).
- 나. 정보통신망, 검색서비스, 검색사업자 및 게시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신설).
-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인격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인격권피해자”라 함)는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신설).
- 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법원 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검색서비스 결과에 나타날 경우 인격권피해자는 검색사업자에게 검색서비스 결과에서 당해 보도 및 그에 달린 댓글 또는 그 동일한 내용의 복제·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그 밖에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 마. 제33조에 따른 인격권 침해배제청구권 및 제33조의2에 따른 검색서비스에 의한 피해구제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법한 기사 댓글이나 조정·

중재·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의 사이트에 복제·전파된 경우에 인격권피해자가 언론사 등을 상대로 그 게시물의 삭제, 정정 등의 구제를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검색사업자 및 사이트관리자는 제4장에 따라 이행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안 제33조의5 신설).

사. 중재위원회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4장에 따른 구제절차에 따르도록 함(안 제33조의6 신설).

아. 제4장에 규정한 것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는 언론보도 등 피해에 대한 구제의 조정, 중재 및 소송에 관하여는 제3장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3조의7 신설).

자. 제4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처리절차는 중재위원회 규칙으로 정함(안 제33조의8 신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를 “언론보도, 그 전파나 매개(媒介) 또는 검색서비스로”로 한다.

제2조에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3. “검색서비스”란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특정 정보에 부합하는 정보를 찾아 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24. “검색사업자”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5. “게시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를 “보도, 그 전파나 매개 또는 검색서비스(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연구 등”을 “연구·상담 및 교육 등”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

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을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와 제33조에 따른 침해배제 청구를”로, “정정보도청구등이”를 “청구 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정보도청구등”을 “청구 등”으로 한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4장(제33조부터 제3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구제 특례

제33조(정보통신망에서의 인격권 침해배제청구권) ①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인격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인격권피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 등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1.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2.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치하면 형평에 반하는 경우

② 언론보도등이 보도 전·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현저히 부정확한 것

으로 판명되어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인격권피해자는 관련 언론사등에 변경된 사정에 따라 해당 언론보도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 행사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3조의2(검색서비스에 의한 피해구제 청구 등) ① 인격권피해자는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삭제, 정정 등 구제가 이루어진 결정 등 또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검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해당 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검색서비스 결과에서 당해 보도 및 그에 달린 댓글(독자 등의 글, 음성, 영상, 그 밖의 메시지와 다른 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동일한 내용의 복제·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그 밖에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조정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인격권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 피해의 조정신청 등) ① 제33조 및 제33조의2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인격권피해자 등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격권피해자가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인격권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언론보도등에 관하여 독자 등의 댓글의 게시를 허용하는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언론사등을 상대로 인격권피해자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댓글의 삭제 등 인격권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격권피해자가 게시물의 존재를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직권조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댓글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언론사등은 지체 없이 조정합의나 조정결정의 내용, 이의 신청에 관한 내용을 댓글 게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사이트나 게시판에 게시하고, 접근차단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인격권피해자는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삭제, 정정 등 구제가 확정된 해당 보도의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복제·전파된 경우 그 복제·전파된 게시물이 소재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게시판 등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이하 “사이트관리자”라 한다)를 상대로 그 게시물의 삭제, 정정 또는 반론 게재 등 필요한 구제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격권피해자가 게시물의 존재를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중재위원회는 제4항의 조정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제·전파된 보도 내용이 게시된 사이트관리자에게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삭제, 정정 등 구제가 이루어진 결정 등 또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통지하고, 그 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복제·전파된 해당 게시물의 삭제, 그 밖에 인격권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직권조정안을 작성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이트관리자는 지체 없이 결정 등의 결과, 직권조정안 및 이의 신청에 관한 내용을 게시자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사이트나 게시판에 게시하고, 접근차단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의4(이의 신청 등) ① 인격권피해자와 제33조의3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법한 침해적 댓글 또는 위법한 침해적 언론보도의 복제·전파 게시물의 게시자는 중재위원회의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이 해당 사이트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는 경우 이미 내린 해당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제소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해당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1항의 이의 기간 내에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제3항의 기간 내에 제소가 없는 경우 해당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은 확정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이의 있는 게시자는 사이트관리자가 제33조의3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게시한 사항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고 안 날부터 7일 내에 이의 신청하거나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3조의5(언론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 등) ① 언론사등, 검색사업자, 사이트관리자는 이 장에 따라 이행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면한다.

② 이 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 등이 인격권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자율 규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 등은 인격권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절차적 사항에 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의6(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에 의한 피해 구제) 중재위원회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 서비스,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 장의 구제절차에 따른다.

제33조의7(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 준용) ① 이 장에 규정한 것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는 언론 보도등 피해에 대한 구제의 조정, 중재, 소송에 관하여는 제3장을 준용한다.

② 제33조의3의 규정은 조정절차에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 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

제33조의8(시행규칙) 이 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중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해배제청구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장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표, 게시 또는 전파된 언론보도등 및 그 복제된 기사, 댓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공표, 게시 또는 전파된 언론보도등 및 그 복제된 기사, 댓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제4장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언론보도등의 검색서비스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보도 및 그에 대한 댓글 또는 그와 동일한 위법한 복제·전파 게시물의 검색서비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 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 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 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 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언론보도, 그 전파나 매개 (媒介) 또는 검색서비스로---- ----- -----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 21. (생략) <신설>	1. ~ 21. (현행과 같음) 22.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 한다.
<신설>	23. “검색서비스”란 정보통신망 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특정 정보에 부합하는 정보를 찾

<신 설> <신 설>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u>보도 또는 매개</u>(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⑪ (생략) 제11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u>조사·연구</u>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u>아 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말한다.</u> 24. “검색사업자”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5. “게시판”이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말한다.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u>보도, 그 전파나 매개 또는 검색서비스</u>(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 ----- ----- -----.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11조(사무처) ① ----- ----- -----<u>연구·상담 및 교육</u> 등----- ----- -----.
---	--

② ~ ④ (생략)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생략)

<신설>

<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① -----

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와 제33조에 따른 침해배제 청구를-----

-----청구 등이-----

-----.

② -----청구 등-----

-----.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
도 피해에 대한 구제 특례
제33조(정보통신망에서의 인격권

침해배제청구권) ①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인격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인격권피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1.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2.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치하면 형평에 반하는 경우

② 언론보도등이 보도 전·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현저히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되어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인격권피해자는 관련 언론사등

<신 설>

에 변경된 사정에 따라 해당 언론보도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 행사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3조의2(검색서비스에 의한 피해구제 청구 등) ① 인격권피해자는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삭제, 정정 등 구제가 이루어진 결정 등 또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검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해당 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검색서비스 결과에서 당해 보도 및 그에 달린 댓글(독자 등의 글, 음성, 영상, 그 밖의 메시지와 다른 사이트에 링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동일한 내용의 복제·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그 밖에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조정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인격

<신 설>

권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 피해의 조정신청 등)

① 제33조 및 제33조의2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인격권피해자 등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격권피해자가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인격권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언론보도등에 관하여 독자 등의 댓글의 게시를 허용하는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언론사등을 상대로 인격권피해자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댓글의 삭제 등 인격권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격권피해자가 게시물의 존재를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

청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직권조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댓글 게시판 등을 운영하는 언론사등은 지체 없이 조정합의나 조정결정의 내용, 이의 신청에 관한 내용을 댓글 게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사이트나 게시판에 게시하고, 접근차단 등 피해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인격권피해자는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삭제, 정정 등 구제가 확정된 해당 보도의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복제·전파된 경우 그 복제·전파된 게시물이 소재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게시판 등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이하 “사이트관리자”라 한다)를 상대로 그 게시물의 삭제, 정정 또는 반론 게재 등 필요한 구제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격권피해자가

게시물의 존재를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중재위원회는 제4항의 조정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제·전파된 보도 내용이 게시된 사이트관리자에게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삭제, 정정 등 구제가 이루어진 결정 등 또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통지하고, 그 결정 등의 취지에 따라 복제·전파된 해당 게시물의 삭제, 그 밖에 인격권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직권조정안을 작성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이트관리자는 지체 없이 결정 등의 결과, 직권조정안 및 이의 신청에 관한 내용을 게시자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사이트나 게시판에 게시하고, 접근차단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4(이의 신청 등) ① 인격

권피해자와 제33조의3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법한 침해적 댓글 또는 위법한 침해적 언론보도의 복제·전파 게시물
의 게시자는 중재위원회의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
조정안이 해당 사이트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부터 7일 이내
에 중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는 경우 이미
내린 해당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을 취소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불
복하는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제소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해당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
권조정안은 그 효력을 상실한
다.

④ 제1항의 이의 기간 내에 적
법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

<신 설>

여 제3항의 기간 내에 제소가 없는 경우 해당 조정합의나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은 확정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이의 있는 게시자는 사이트관리자가 제33조의3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게시한 사항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고 안 날부터 7일 내에 이의 신청하거나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3조의5(언론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 등) ① 언론사등, 검색사업자, 사이트관리자는 이 장에 따라 이행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면한다.

② 이 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 등이 인격권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자율 규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 등은 인격권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신 설>

<신 설>

위해 요구되는 절차적 사항에
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의6(유사 뉴스서비스 전자
간행물에 의한 피해 구제) 중
재위원회는 제2조제1호에 해당
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
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
스,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계
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
공하는 전자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
장의 구제절차에 따른다.

제33조의7(정보통신망을 통한 언
론보도등 피해에 대한 구제 절
차 준용) ① 이 장에 규정한
것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는 언론보도등 피해에
대한 구제의 조정, 중재, 소송
에 관하여는 제3장을 준용한다.
② 제33조의3의 규정은 조정절
차에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
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

제33조의8(시행규칙) 이 장의 시

<u>제4장</u> 벌칙	<u>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처리절차는 중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u> <u>제5장</u> 벌칙
----------------------	---